

1. 개정이유

상이등급기준을 신체부위별로 형평성을 제고하고, 손(발)가락 영구 절단 장애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하는 등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상이등급 7급 인정기준에 여성군인·경찰이 증가하는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여성생식기 장애 기준 신설함(안 별표 4 제5호나목)
- 나. 신체영구 절단장애 중 상이등급 7급 인정기준에 둘째손가락은 원위지관절 이상 절단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발가락 절단 장애에 대하여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신체상이 정도에 대한 장애내용을 보다 세분화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하여 신설함(안 별표 4 제7호나목 및 제8호나목)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입법예고(2021. 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5호나목에 7급 5204의 장애내용란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쪽 난소 또는 난관이 상실된 사람

별표 4 제7호나목 6급 1항 7301 6급 1항 7302 6급 2항 7308 6급 2항 7309 6급 3항 7310 7급 73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6급 1항 7301
6급 1항 7302
6급 2항 7308
6급 2항 7309
6급 3항 7310

별표 4 제7호나목에 7급 73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급 7311	엄지손가락은 지관절(손가락관절), 둘째손가락은 원위지관절(끝쪽손가락뼈마디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근위지관절(몸쪽손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별표 4 제8호나목에 7급 8308 7급 83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급 8308	엄지발가락은 지관절(발가락관절), 그 밖의 발가락은 근위지관절(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급 8311	

별표 4 제8호나목에 7급 8312 7급 83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급 8312	엄지발가락은 지관절(발가락관절), 그 밖의 발가락은 원 위지관절(끝쪽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급 831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제8조의3 관련)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제8조의3 관련)	
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가. 장애 측정방법 (생략)		가. 장애 측정방법 (현행과 동일)	
나. 상이등급 내용		나. 상이등급 내용	
7급 5204	1)~3) (생략) 4) <신설>	7급 5204	1)~3) (현행과 동일) <u>4) 한쪽 난소 또는 난관이 상실된 사람</u>
7. 팔 및 손가락의 장애		7. 팔 및 손가락의 장애	
가. 장애 측정방법 (생략)		가. 장애 측정방법 (현행과 동일)	
나. 상이등급 내용		나. 상이등급 내용	
6급 1항 7301 6급 1항 7302 6급 2항 7308 6급 2항 7309 6급 3항 7310 <u>7급 7311</u>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손가락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근위지관절 (몸쪽손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급 1항 7301 6급 1항 7302 6급 2항 7308 6급 2항 7309 6급 3항 7310 <삭제>	(현행과 동일)
<u>7급 7311</u>	<신설>	<u>7급 7311</u>	<u>엄지손가락은 지관절 (손가락관절), 둘째손 가락은 원위지관절(끝 쪽손가락뼈마디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근위 지관절(몸쪽손가락뼈</u>

			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장애 측정방법		가. 장애 측정방법	
(생 략)		(현행과 동일)	
나. 상이등급 내용		나. 상이등급 내용	
7급 8205	(생 략)	7급 8205	(현행과 동일)
<신 설>		7급 8308 7급 8311	엄지발가락은 지관절(발가락관절), 그 밖의 발가락은 근위지관절(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급 8309	(생 략)	7급 8309	(현행과 동일)
<신 설>		7급 8312 7급 8313	엄지발가락은 지관절(발가락관절), 그 밖의 발가락은 원위지관절(끝쪽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